

# 사단법인 유니세프한국위원회의 재무제표

별첨 :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제26기

2018년 01월 0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사단법인 유니세프한국위원회

# 목 차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	1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	7
운영성과표	.....	9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10

#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사단법인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이사회 귀중

2019년 3월 26일

## 감사의견

우리는 사단법인 유니세프한국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무제표는 2018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운영성과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위원회의 재무제표는 위원회의 2018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운영성과의 내용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과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 감사의견근거

우리는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리의 책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 기타사항

위원회는 2018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연차보고기간부터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공익법인회계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적용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익법인회계기준 부칙 제3조에 따라 동 기준 제9조에 따른 비교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

경영진은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위원회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평가하고 해당되는 경우, 계속기업 관련 사항을 공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진이 기업을 청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할 의도가 없는 한,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사용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지배기구는 위원회의 재무보고절차의 감시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목적은 위원회의 재무제표에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신을 얻어 우리의 의견이 포함된 감사보고서를 발행하는 데 있습니다. 합리적인 확신은 높은 수준의 확신을 의미하나, 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된 감사가 항상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한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왜곡표시는 부정이나 오류로부터 발생할 수 있으며, 왜곡표시가 재무제표를 근거로 하는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면, 그 왜곡표시는 중요하다고 간주됩니다.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일부로서 우리는 감사의 전 과정에 걸쳐 전문가적 판단을 수행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재무제표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며 그러한 위험에 대응하는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합니다. 그리고 감사의견의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합니다. 부정은 공모, 위조, 의도적인 누락, 허위진술 또는 내부통제 무력화가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으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하지 못할 위험은 오류로 인한 위험보다 큽니다.
-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감사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는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적용한 회계정책의 적합성과 경영진이 도출한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의 합리성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 경영진이 사용한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적절성과, 입수한 감사증거를 근거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결론을 내립니다.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우리는 재무제표의 관련 공시에 대하여 감사보고서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들 공시가 부적절한 경우 의견을 변형시킬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감사보고서일까지 입수된 감사증거에 기초하나, 미래의 사건이나 상황이 위원회의 계속기업으로서 존속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 공시를 포함한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와 구조 및 내용을 평가하고, 재무제표의 기초가 되는 거래와 사건을 재무제표가 공정한 방식으로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사항들 중에서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 그리고 감사 중 식별된 유의적 내부통제 미비점 등 유의적인 감사의 발견사항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합니다.

대표이사

정 석 용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2019년 3월 26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이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까지의 기간 사이에 첨부된 위원회의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 (첨부)재 무 제 표

## 사단법인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제26(당)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첨부된 재무제표는 당사가 작성한 것입니다.”

사단법인 유니세프한국위원회    회장    송    상    현

# 재 무 제 표

## 재 무 상 태 표

제26(당)기 2018년 12월 31일 현재

사단법인 유니세프한국위원회

(단위: 원)

과목	제26(당)기		
	통합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자산			
I.유동자산	34,160,851,150	32,327,948,491	1,832,902,659
현금및현금성자산(주석3)	22,788,849,144	21,037,751,535	1,751,097,609
단기금융상품	11,064,435,833	11,045,581,484	18,854,349
미수금	113,705,805	56,841,505	56,864,300
미수수익	87,533,049	84,983,342	2,549,707
선급비용	3,027,074	2,642,615	384,459
선급금	1,483,050	1,483,050	-
선급법인세	98,699,870	98,664,960	34,910
부가세대급금	3,117,325	-	3,117,325
II.비유동자산	27,809,930,762	19,026,526,549	8,783,404,213
유형자산	27,659,004,162	18,875,599,949	8,783,404,213
토지	18,718,676,300	12,676,953,366	6,041,722,934
건물	8,978,879,979	6,080,816,878	2,898,063,101
(-)감가상각누계액	(484,507,603)	(328,125,781)	(156,381,822)
비품	554,630,661	554,630,661	-
(-)감가상각누계액	(444,280,962)	(444,280,962)	-
차량운반구	227,175,443	227,175,443	-
(-)감가상각누계액	(217,244,532)	(217,244,532)	-
구축물	334,362,000	334,362,000	-
(-)감가상각누계액	(8,687,124)	(8,687,124)	-
무형자산	2,000	2,000	-
소프트웨어	2,000	2,000	-
기타비유동자산	150,924,600	150,924,600	-
임차보증금	150,924,600	150,924,600	-
자산총계	61,970,781,912	51,354,475,040	10,616,306,872

과목	제26(당)기		
	통합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부채			
I.유동부채	27,434,132,780	25,056,644,699	2,377,488,081
유니세프본부송금	22,222,439,886	22,222,439,886	-
미지급금	1,983,610,198	1,970,500,278	13,109,920
예수금	41,482,480	40,319,370	1,163,110
미지급비용	844,545,025	823,385,165	21,159,860
선수금	341,700	-	341,700
기타유동부채	2,333,000,000	-	2,333,000,000
부가세예수금	8,713,491	-	8,713,491
II.비유동부채	1,210,390,105	1,184,524,634	25,865,471
퇴직급여충당금	1,538,850,852	1,512,985,381	25,865,471
퇴직연금운용자산	(328,460,747)	(328,460,747)	-
부채총계	28,644,522,885	26,241,169,333	2,403,353,552
순자산			
I.기본순자산	206,602,969	206,602,969	-
II.보통순자산	33,119,656,058	24,906,702,738	8,212,953,320
적립금	28,011,918,279	19,655,071,690	8,356,846,589
잉여금	5,107,737,779	5,251,631,048	(143,893,269)
순자산총계	33,326,259,027	25,113,305,707	8,212,953,320
부채 및 순자산 총계	61,970,781,912	51,354,475,040	10,616,306,872

“첨부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운 영 성 과 표

제 26(당)기 2018 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

사단법인 유니세프한국위원회

과목	제 26(당)기		
	통합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I.사업수익	<b>145,497,474,468</b>	<b>145,112,390,881</b>	<b>385,083,587</b>
기부금수익	134,779,900,656	134,779,900,656	-
기부금외수익	10,717,573,812	10,332,490,225	385,083,587
이자수익	630,685,380	627,902,250	2,783,130
유니세프본부지원금	9,704,587,975	9,704,587,975	-
임대수익	382,300,457	-	382,300,457
II.사업비용(주석15)	<b>145,181,028,173</b>	<b>144,830,295,415</b>	<b>350,732,758</b>
사업수행비용	136,691,980,781	136,691,980,781	-
일반관리비용	3,864,046,093	3,864,046,093	-
모금비용	4,274,268,541	4,274,268,541	-
기타사업비용	350,732,758	-	350,732,758
III.사업이익(손실)	<b>316,446,295</b>	<b>282,095,466</b>	<b>34,350,829</b>
IV.사업외수익	<b>160,220,907</b>	<b>160,220,876</b>	<b>31</b>
유형자산처분이익	299,000	299,000	-
외환차익	40,629,302	40,629,302	-
외화환산이익	2,649,804	2,649,804	-
잡이익	116,642,801	116,642,770	31
V.사업외비용	<b>215,120</b>	<b>215,120</b>	-
외환차손	213,880	213,880	-
잡손실	1,240	1,240	-
VI.당기운영이익(손실)	<b>476,452,082</b>	<b>442,101,222</b>	<b>34,350,860</b>

“첨부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26(당기) 2018년 12월 31일 현재

사단법인 유니세프한국위원회

## 1. 공익법인의 개황 및 주요사업 내용

사단법인 유니세프한국위원회(이하 “한국위원회”라 함)는 대한민국에서 유니세프 본부와 맺은 협약에 따라 세계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를 위해 광범위한 지지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위원회는 :

- 유니세프의 이념을 홍보하며 그 목표를 지원하고 이해를 증진시키는 사업
- 사회각계 여론지도자들(정치, 경제, 사회복지, 교육, 법조, 과학기술, 예술, 종교, 여성, 청소년)과 일반대중에게 어린이와 여성을 위한 유니세프의 가치를 장려하여 인지도를 높이는 사업
-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준수를 옹호, 어린이의 참여를 통합 협약의 이행을 이해시키고 촉구하는 사업
- 세계교육사업을 통해 학교 어린이와 일반대중의 세계관을 넓히고 세계를 향한 이해, 협력, 평화에 기여하는 사업
- 어린이를 위한 사업이 전반적 사회, 경제 개발의 일환으로 인식되도록 여론을 진작시키는 사업
- 대한민국 어린이와 여성에 대한 기본사업 및 개발도상국 어린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대한민국 및 세계 각국의 비 정부기구와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활성화하는 사업
- 대한민국의 경제력에 상응한 공적개발원조의 지원과 유니세프에 대한 재정지원 증가를 촉구하는 사업
- 대한민국에서 세계 어린이에 대한 정보 및 유니세프의 세계적 활동을 널리 알리며, 어린이의 지원을 위한 후원자 모집, 유니세프 로고 관리와 물품 판매 및 사랑의 동전모으기 등을 통해 어린이 돕기 기금을 조성하는 사업
- 대한민국에서의 아동권리 교육사업, 아동친화기업 인증사업, 모유수유권장사업 및 협력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등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 한국위원회 사무소 건물의 유희 공간 임대차사업
- 기타 관련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사업 또는 유니세프와의 협약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위원회는 1993년 12월 8일에 외무부로부터 설립허가를 얻어 206,602,969원의 출연금으로 1994년 1월 1일에 공식출범하였습니다.

## 2. 공익법인이 채택한 회계정책

한국위원회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및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적용한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회계기준의 적용

한국위원회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및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당기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 (2) 현금 및 현금성자산

한국위원회는 통화 및 타인발행수표 등 통화대용증권과 당좌예금, 보통예금 및 큰 거래 비용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이 중요하지 않은 금융상품으로서 취득당시 만기일(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내인 것을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3) 금융상품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한국위원회가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최초 인식 시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가 아닌 경우 당해 금융자산(금융부채)의 취득(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하는 공정가치에 가산(차감)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유가증권, 파생상품 및 당기손익인식지정항목을 제외하고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위원회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하여 회수가능액이 상각후원가 또는 취득원가보다 작은 경우에는 손상차손이 불필요하다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손상차손을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의 회복이 손상차손 인식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당초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회복일 현재의 상각후원가(또는 취득원가)를 한도로 당기이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양도의 경우에, 한국위원회가 금융자산 양도 후 양도자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양도 후에 효율적인 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양수인이 양수한 금융자산을 처분할 자유로운 권리가 있을 때에 한하여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으며, 이외의 경우에는 금융자산을 담보로 한 차입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 (4) 유형자산

한국위원회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산정 시, 당해 자산의 제작원가 또는 구입원가 및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를 가산하고 있습니다. 현물출자,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공

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하고, 동일한 업종 내에서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고 공정가치가 비슷한 동종자산과의 교환으로 받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인식합니다. 한편, 다른 종류의 자산과의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는 교환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이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인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고,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은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의 유형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구분	추정내용연수
건물	50년
건축물	50년
비품	5년
차량운반구	5년

유형자산의 제거로부터 발생하는 손익은 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액으로 결정되며,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5) 무형자산

한국위원회의 무형자산으로 계상된 소프트웨어는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에 취득부대비용을 가산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계상하며, 당해 자산의 사용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액을 영(‘0’)으로 하여 5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며 이에 의해 계산된 상각액을 직접 차감한 잔액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 (6) 수입의 인식기준

한국위원회는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유니세프를 대신하여 성금, 기증품, 유산 등의 증여를 받고 있습니다. 성금 및 기부금의 공급은 한국위원회가 자금을 수령하는 시점에서 수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7) 자산손상

금융자산에 속하는 자산을 제외한 한국위원회의 모든 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 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며,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추정합니다. 만약,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금창출단위란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에서의 현금유입과는 거의 독립적인 현금유입을

창출하는 식별가능한 최소 자산집단을 의미합니다. 개별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 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며 이러한 장부금액의 감소는 손상차손(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8) 퇴직급여

한국위원회는 보고기간말 현재 1년 이상 근속한 전종업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근로기준법과 한국위원회의 퇴직금지급 규정 중 큰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급여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위원회는 2010년부터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총근무기간을 가입기간으로 하고 퇴직연금제도 설정 이전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도 퇴직연금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존 퇴직금 제도의 퇴직급여충당부채와 퇴직연금 도입 후 퇴직급여충당부채를 합산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위원회의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로써 수급요건을 갖춘 종업원은 퇴직시에 확정된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종업원이 퇴직하기 전에는 보고기간말 현재 종업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급여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으며, 퇴직연금에 대한 수급요건 중 가입기간 요건을 갖추고 퇴사한 종업원이 퇴직연금의 수령을 선택한 경우에는 보고기간말 이후 퇴직종업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예상퇴직연금합계액을 보험수리적가정을 사용하여 추정하고, 만기가 비슷한 국공채의 매 보고기간말 현재 시장이자율에 기초하여 할인한 현재가치를 퇴직연금미지급금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망률과 같은 보험수리적 가정이 바뀌거나 시간의 경과에 따라 현재가치가 증가한 경우 퇴직급여로 비용처리하고 있습니다. 당기말에는 보험수리적 가정을 적용한 퇴직연금미지급금은 없습니다.

퇴직연금제도에서 운용되는 자산은 퇴직연금운용자산의 과목으로 하여 퇴직급여관련 부채, 즉 퇴직급여충당부채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 (9) 환율변동효과

### 1) 기능통화 및 표시통화

한국위원회는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기능통화)이며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표시통화인 ‘원’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 2) 외화거래

한국위원회는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였습니다.

또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환율로 환산하고 있으며 환산손익은 당기손익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 (10) 법인세회계

한국위원회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며,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등의 법령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설정 대상 소득을 제외하고 당해 사업연도에 부담할 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세액을 법인세 등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위원회는 전기부터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 (11) 유니세프캠페인 관련 부채 및 손익계정

한국위원회는 “유니세프-유니세프한국위원회의 협정서(Cooperation Agreement)”에 따라 한국에서 모금활동을 전개하여 모금총액의 일정액을 세계아동의 생존,보호,발달,참여를 위한 지원금으로 유니세프로 송금하고 있습니다.

한국위원회가 개최한 캠페인을 통하여 모금된 기부금 등은 전액 수입으로 인식하고 유니세프로 송금할 금액은 유니세프본부송금 계정의 비용으로 계상하는 동시에 유니세프본부에 대한 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 (12) 회계추정의 사용

한국위원회는 자산 및 부채의 금액, 충당부채 등에 대한 공시, 수익 및 비용의 측정과 관련하여 많은 합리적인 추정과 가정을 사용합니다. 여기에는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대한 평가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평가금액을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차기에 유의적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3. 사용이 제한된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내용

당기말 현재 사용이 제한된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	금융기관	금액
보통예금	국민은행	1,540,000

## 4. 차입금 등 현금 등으로 상환하여야 하는 부채의 주요 내용

당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차입금 등 현금 등으로 상환하여야 하는 부채는 없습니다.

## 5. 현물기부의 내용

당기 보고기간의 현물기부의 내용은 없습니다.

## 6. 제공한 담보 및 보증의 주요 내용

당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제공한 담보, 보증의 주요 내용은 없습니다.

**7. 특수관계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0호의 정의에 따른다)과의 중요한 거래의 내용**

당기 보고기간의 특수관계인과의 중요한 거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금거래

(단위: 원)

구분	내용	유니세프 본부지원금	유니세프 본부 송금
유니세프 본부	자금거래	9,704,587,975	92,351,604,000

(2) 수익,비용 및 채권, 채무

(단위: 원)

구분	수익	비용	채권	채무
유니세프 본부	9,704,587,975	114,574,043,886	-	22,222,439,886

**8. 총자산 또는 사업수익금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한 거래처명, 거래금액, 계정과목 등 거래 내역**

당기 보고기간의 총자산 또는 사업수익금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한 거래처명, 거래금액, 계정과목 등 거래 내역은 주석7과 동일합니다.

**9. 회계연도 말 현재 진행 중인 소송 사건의 내용, 소송금액, 진행 상황 등**

당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진행 중인 소송 사건의 내용, 소송금액, 진행 상황 등은 없습니다.

**10.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수정에 관한 사항**

당기 보고기간의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수정에 관한 사항은 없습니다.

**11. 기본순자산의 취득원가와 공정가치를 비교하는 정보에 관한 사항**

당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본순자산의 취득원가와 공정가치는 같습니다.

12. 순자산의 변동에 관한 사항

(단위: 천원)

과목	통합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기본 순자산	보통순자산		기본 순자산	보통순자산		기본 순자산	보통순자산	
		적립금	잉여금		적립금	잉여금		적립금	잉여금
당기초	206,603	27,697,556	4,945,648	206,603	21,473,710	5,123,892	-	6,223,846	(178,244)
당기 운영 이익 (손실)	-	-	476,452	-	-	442,101	-	-	34,351
적립금 전입	-	314,362	(314,362)	-	(1,818,638)	(314,362)	-	2,133,000	-
당기말	206,603	28,011,918	5,107,738	206,603	19,655,072	5,251,631	-	8,356,847	(143,893)

13. 유형자산 재평가차액의 누적금액

당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유형자산 재평가차액의 누적금액은 없습니다.

14. 유가증권의 취득원가와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된 공정가치를 비교하는 정보

당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보유 유가증권은 없습니다.

15. 사업비용의 성격별 구분

운영성과표에는 사업비용이 기능별로 구분되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다시 성격별로 구분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과목	분배비용	인력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	합계
공익목적사업비용	<b>114,734,638,765</b>	<b>4,831,732,024</b>	<b>871,451,625</b>	<b>24,392,473,001</b>	<b>144,830,295,415</b>
사업수행비용	114,734,638,765	1,192,537,762	19,499,421	20,745,304,833	136,691,980,781
일반관리비용	-	2,315,398,767	817,262,062	731,385,264	3,864,046,093
모금비용	-	1,323,795,495	34,690,142	2,915,782,904	4,274,268,541
기타사업비용	-	<b>133,516,618</b>	<b>102,009,112</b>	<b>115,207,028</b>	<b>350,732,758</b>
합계	<b>114,734,638,765</b>	<b>4,965,248,642</b>	<b>973,460,737</b>	<b>24,507,680,029</b>	<b>145,181,028,173</b>